

韓國의 市場開放決定要因 分析

左 承 喜

本稿는 政策行態에 대한 政治經濟學的 接近方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市場開放에 대한 需要·供給 및 實際市場開放의 決定要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市場開放政策의 行態를 분석하였다.

로짓分析에 의한 실증분석결과는 政治經濟學的 接近方法의 타당성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市場開放政策은 經濟原則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政治經濟學的 要因들—국내이해관련집단들의 自己庇護主張이나 美國의 開放壓力 등—에 의해 歪曲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公正貿易'의 旗幟下에 가해지고 있는 美國의 開放壓力은 오히려 美國企業들의 利害關係를 대변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이해관련집단의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市場開放의 合理的 原則의 건지를 더 어렵게 하였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分析結果에 의하면 金후의 經濟民主化 趨勢의 進展으로 開放政策을 포함하는 一般經濟政策의 立案, 推進에 있어 이해관련집단들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자칫하면 政策方向의 歪曲 및 執行의 效率性 低下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政策轉換의 배경으로서 1970년대 초에서부터 産業保護를 통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 70년대말에 접어들

I. 序 論

韓國은 1983년 하반기 이후 商品市場開放을 擴大하여 國內産業에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國際競爭力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市場開放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筆者: 本院 研究委員

* 本 研究는 拙稿, 左承喜(1987)의 補論에 해당된

다. 同 研究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실증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本 研究에서는 標本의 擴充 및 資料의 一貫性을 確保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결과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本 研究의 잠정적 결과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計量經濟學會 월례모임참석자들과 經濟思想研究會 會員들, 그리고 本稿의 草稿에 대해 사려 깊은 논평을 해준 本院의 李元暎 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자료정리는 물론 유익한 논평을 해준 趙庸斗 연구원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林明姬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면서 자원배분의 왜곡,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 과보호에 따른 폐해는 물론 過剩投資에 따른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교롭게도 韓美間의 交易環境은 1983년경부터 긴장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美國은 公正貿易의 旗幟 아래 交易相對國의 市場開放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雙務的·攻擊的 貿易政策方向은 넓게는 일반적인 世界交易環境의 악화추세와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좁게는 美國의 달러貨高評價, 산업의 국제경쟁력약화와 그에 따른 貿易收支赤字의 누적 등 美國 自體의 經濟與件 惡化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특히 韓國의 對美貿易黑字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체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되기 시작함에 따라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도 깊이나 포괄범위에 있어 그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韓國의 產業 및 貿易政策方向의 선회나 美國의 전반적인 對韓市場開放壓力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韓國의 전체적인 시장개방 정도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과 그에 대한 韓國의 대응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는 대개가 이러한 巨視的 視角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자칫하면 숲을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는 愚를 범할 우려가 있다 하겠다. 市場開放政策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實踐計劃(action program)의 樹立이나 美國의 壓力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개별 나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經濟政策의 수립에 있어서는 단순히 정

책의 經濟的 妥當性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현실적 實行可能性(feasibility)에 대한 검토가 따르지 않으면 안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 실행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市場開放政策의 구체적 추진은 個別產業 및 品目水準에서의 집행을 수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市場開放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라 해당산업 및 품목의 生産者들의 開放政策에 대한 수용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더구나 政治民主化의 進展에 따라 個別經濟主體인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해관련그룹으로서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며 그들의 주장이 그만큼 강하게 個別經濟政策의 樹立·執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효과적인 市場開放政策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個別產業이나 品目の 市場開放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本 研究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韓國의 產業別·品目別 市場開放의 결정요인을 분석추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第Ⅱ章에서는 分析模型 및 方法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하고 第Ⅲ章에서는 실제 實證分析結果를 報告·說明하고자 한다. 第Ⅳ章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市場開放政策을 포함한 一般經濟政策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로 표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Y^d_i = D(X^d_i) \dots \dots \dots (1)$$

$$Y^s_i = S(X^s_i) \dots \dots \dots (2)$$

II. 分析模型 및 實證分析方法

本 研究에서의 分析模型은 拙稿, 左承喜 (1987)에서 원용하였다. 同 研究는 렌트追求理論, 그룹行態理論, 規制理論, 傳統的 貿易理論 및 최근의 戰略的 貿易政策理論의 示唆點들을 원용하여 公共選擇理論의 틀 안에서 國際公共財로서의 市場開放에 대한 수요와 공급함수의 定型화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市場開放은 市場개방에 따라 이득을 보게 되는 그룹과 市場개방에 따라 손실을 보게 되는 그룹간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同 研究는 公共選擇理論의 접근방법에 따라 政府의 政策決定者들이 合理的 (rational)이며 自利追求的 (self-interested) 이라고 상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政策決定 및 執行過程이 내생화되게 된다고 보고 있다¹⁾.

韓國의 경우 독자적인 市場開放政策의 추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美國으로부터의 市場開放壓력이 본격화되었음을 감안할 때 市場開放需要의 결정요인으로서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를 결정하는 요인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반면 市場開放의 供給은 결국 국내의 既存輸入規制를 解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입규제하에서 렌트를 향유했던 기존의 보호산업 혹은 기업들로부터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需要供給函數를 수식으

여기서 式 (1)은 需要函數, 式 (2)는 供給函數이며 Y_i 는 i 産業의 혹은 i 品目に 대한 市場開放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上添字 d 는 需要, s 는 供給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上添字 d 를 갖는 X^d_i 는 需要決定變數들의 벡터를, 上添字 s 를 갖는 X^s_i 는 供給決定變數들의 벡터를 나타내며 D 와 S 는 각각 需要와 供給函數를 표시한다.

式 (1)과 式 (2)를 이용하면 실제 市場개방수준에 대한 축약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式 (1)의 X^d_i 에는 需要價格으로서의 對政府로비費用이 포함된다고 상정하며 需要는 同 費用의 負의 函數, 式 (2)의 X^s_i 에는 供給價格으로서의 對政府 反對로비費用이 포함되며 비용체증 가정하에서 供給은 同 費用의 正의 函數로 상정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가격변수를 치환하면 실제시장개방수준은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Y_i = H(X_i) \dots \dots \dots (3)$$

여기서 H 函數는 均衡市場開放函數, Y_i 는 均衡 (實際) 市場開放水準을 나타낸다. 한편 $X_i = \{X^d_i, X^s_i\}$ 로 실제시장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서 需要·供給決定要因을 망라하고 있다.

上記 研究는 앞에서 거론된 여러 가지 關聯理論들의 시사점에 기초하여 X^d_i 와 X^s_i 즉 X_i 의 내용을 상술하고 그 期待符號들을 추론함으로써 市場開放의 需要·供給 및 均衡式을 定型화하였다. 上記 研究의 이론모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市場開放需要는 美國의 수출기

1) 이러한 假說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開化된 政府 (enlightened government) 假說이 갖는 本 研究에 있어서의 意義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업의 입장에서 본 韓國市場에서의 期待利得, 美國企業들의 競爭力水準, 同 企業들의 美國政府에 대한 로비의 강도 등의 正의 函數로, 반면에 市場開放의 供給은 市場開放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期待損失의 負의 函數, 市場開放에 대한 對政府反對로비 강도의 正의 函數로 假說化될 수 있다²⁾.

個別研究에 있어서의 X_i 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의 목적, 자료의 가용성 등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本 研究에서 사용된 변수들과 그 변수들의 의의는 다음 章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실증분석방법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式 (3)은 「크로스섹션」資料를 이용하여 分析할 수 있는데 자료측정상의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Y_i 는 물론 X_i 중의 많은 변수들이 質的變數(qualitative variables)로 주어지며 특히 Y_i 에 대해서는 市場開放 여부를 나타내는 1(市場開放), 0(非關稅輸入規制), 더미變數(dummy variable) 형태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하겠다. 本 研究에서는 質的選擇模型(qualitative choice)인 로짓模型(logit

model)을 사용하였는데 이하에서는 同 豫測方法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여기서 로짓模型의 기초가 되는 累積로지스틱確率函數(cumulative logistic probability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_i = F(Z_i) = F(\alpha + \beta X_i) = \frac{1}{1 + e^{-Z_i}} \\ = \frac{1}{1 + e^{-(\alpha + \beta X_i)}} \dots \dots \dots (4)$$

여기서 P_i 는 市場開放決定要因 X_i 가 주어졌을 경우 i 産業이나 品目の 市場이 실제로 개방될 確率을 나타내며, e 는 자연대수의 밑이고 α 와 β 는 豫測對象係數이다. 여기서 Z_i 는 $Z_i = \alpha + \beta X_i$ 로 정의된다. 통상의 그룹화된 표본의 경우는 각 그룹으로부터 빈도수를 계산함으로써 관련 P_i 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으나 本稿에서처럼 표본이 그룹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P_i 는 측정될 수 없다³⁾.

이와 같이 P_i 가 관측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다행히 最尤度推定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가능하다. 우선 市場開放 여부를 측정하는 Y_i 중 1(市場開放)인 측정치의 수를 n_1 , 0(輸入禁止)인 측정치의 수를 n_2 , Y_i 의 全體測定值數를 n 이라 하자. 여기서 $n_1 + n_2 = n$ 이 된다. 극대화하고자 하는 尤度函數(likelihood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L = Prob(Y_1, Y_2, \dots, Y_n) \\ = Prob(Y_1) \dots Prob(Y_n) \dots \dots (5)$$

여기서 Y_i 의 각 측정치는 상호독립적이라 가정한다. 定義에 의해 i 번째 산업이나 품목의 시장이 개방될 확률 P_i 는 $P_i = Prob(Y_i = 1 | X_i)$ 와 같고, 수입금지될 확률 $(1 - P_i)$ 은 $1 -$

2) 여기서의 논의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축약하도록 하였으며 좀더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左承暉(1987)를 參照하기 바란다.
3) 그룹화된 資料의 경우에는 실제 계산된 빈도수를 P_i 의 측정치로 상정하고 (4)式的 변형에 攪亂項 V 를 추가한 $\log \frac{P_i}{1 - P_i} = Z_i + V = \alpha + \beta X_i + V$ 를 예측한다. 이때 그룹(i)의 수가 클 경우에는 OLS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측정된 P_i 와 진정한 P_i 값의 괴리로 인해 攪亂項 V 가 異分散性(hetero-skedasticity)을 갖기 때문에 GLS에 측정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룹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X_i 중의 한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자의적으로 그룹화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그룹의 수가 회귀분석을 가능케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의 논의와 본문에서의 추가적인 예측방법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Pindyck and Rubinfeld(1981), Chapter 10 참조.

$P_i = Prob(Y_i=0|X_i)$ 와 같다. 따라서 式 (5)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begin{aligned}
 L &= P_1 \cdots P_{n_1} (1 - P_{n_1+1}) \cdots (1 - P_n) \\
 &= \prod_{i=1}^{n_1} P_i \prod_{i=n_1+1}^{n_2} (1 - P_i) \\
 &= \prod_{i=1}^{n_1} P_i^{Y_i} (1 - P_i)^{(1-Y_i)} \\
 &\dots\dots\dots(6)
 \end{aligned}$$

마지막 등호는 처음 n_1 測定値에 대해서는 $Y_i=1$, 마지막 n_2 測定値에 대해서는 $Y_i=0$ 이 되기 때문에 성립한다. 실제예측에 있어서는 로그最尤도를 극대화하게 되는데 式 (6)에 로 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og L &= \sum_{i=1}^{n_1} \log P_i + \sum_{i=n_1+1}^{n_2} \log(1 - P_i) \\
 &\dots\dots\dots(7)
 \end{aligned}$$

여기서 式 (4)의 $P_i = \frac{1}{1 + e^{-(\alpha + \beta X_i)}}$ 를 式 (7)에 대입하면 式 (7)은 α 와 β 의 函數로 표시되며 통상의 극대화과정을 통해 α 와 β 에 대한 예측치를 얻게 된다. 이상의 예측방법에 있어서는 Y_i 에 대한 측정치(1, 0)는 전체표본을 두 개의 그룹(n_1 과 n_2)으로 분할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最尤度推定法の 경우 전체 혹은 일부설명변수들의 유의성을 검증해 보기 위한 검증은 통상의 F-檢證 대신에 다음과 같은 χ^2 檢證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전체설명변수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의 尤度函數값(LUR)에 대한 일부변수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의 尤度函數값(LR)의 비율을 λ ($\lambda = LR/LUR$)라고

하면 $-2 \log \lambda$ 는 χ^2 분포를 따르게 된다. 한편 이 경우 통상의 R^2 와 유사한 예측의 適合度(goodness of fit)를 판별할 수 있는 統計値로는 $1 - LR/LUR$ 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LR은 常數項만을 이용한 예측결과의 尤度函數값이다⁴⁾.

다음 章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한 回歸分析結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Ⅲ. 實證分析

1. 豫備의 論議

本 研究에서 자료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하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우리나라의 市場開放이 1983년부터 본격화되고 美國으로부터의 開放要求도 이 시기부터 可視化되기 시작하였음을 감안하여 전체 非關稅輸入規制下의 品目選定은 1982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市場開放品目は 1983년에서 1987년 말까지에 걸쳐 개방된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市場開放與否는 기존의 비관세수입규제의 해제여부로 파악하였다.

비관세수입규제품목의 구체적 선정은 분석상 설명변수가 될 각 품목의 個別特性에 대한 정보의 可用性을 감안하여 I/O분류법을 사용한 韓國開發研究院(1982)의 연구에서 추출된 151개 품목(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중 107개 품목이 1987년말 현재 개방되었다. 한편 美國으로부터의 市場開放要求品目は 불행하게도 "통칭분류"에 의거하고 있어 上記 I/O분류와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

4) 여기서의 논의는 Pindyck-Rubinfeld의 前掲書 Chapter 10의 Appendix 10.1을 주로 인용하였다. 이러한 예측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해 준 서울대학교의 포학길 教授께 감사를 드린다.

〈表 1〉 標本에 대한 情報

| | | 總 標 本 (151個品目) | 開放要求 ³⁾ (57個品目) |
|-------------------------|------|-------------------------|-------------------------------|
| 開放 與否 | 開 放 | 107(70.9) ¹⁾ | 38(66.7) |
| | 未開放 | 44(29.1) | 19(33.3) |
| 産業別 分布 ²⁾ | 資本集約 | 47(31.1) | 22(38.6) |
| | 勞動集約 | 39(25.8) | 18(31.6) |
| | 技術集約 | 70(46.4) | 16(28.1) |
| | 農水產物 | 31(20.5) | 21(36.8) |

註: 1) () 內는 構成比(%)임.

2) 품목에 따라서는 1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비의 합이 100보다 큼.

3) 開放要求品目 중 개방된 품목수가 左承喜(1987)에서는 32개로 나타났음. 이 차이는 자료기간이 1987년 上半期까지인 반면 여기서는 1987년말까지이기 때문임.

4) 대체로 開放率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대한 공식 開放스케줄이나 開放實績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표본이 未開放된 農產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資料: 附表 참조.

였다. 이 경우 품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상식선에서의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151개 품목 중 57개 품목이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品目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7개 품목 중에서 38개 품목이 개방되었다. 전체 표본에 대한 데이터는 附表에 수록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은 〈表 1〉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설명변수로 사용된 産業 및 品目特

5) 여기서의 시차문제에는 통상의 時系列分析에서의 시차문제와는 상이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의 時系列化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몇개의 資料時點에 대한 時系列化를 통해 「크로스섹션」과 時系列資料의 結合分析(pooling)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상정한 시차효과를 예측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하겠다.

6) 이하에서 논의되는 각 변수들의 分析上的 意義와 이에 관련된 文獻들에 대한 좀더 상세한 설명은 左承喜(1987)를 參照하기 바란다.

性變數들을 포함한 변수별 정의 및 자료출처는 〈表 2〉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 〈表 2〉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被說明變數인 市場開放與否에 대한 자료는 1983~1987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설명변수들은 1981년이나 198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 변수간의 시차를 허용한 이유는, 政治經濟學的 요인의 반영으로서의 市場開放與否의 결정과정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동태적 현상으로서 설명변수의 효과가 市場開放與否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個別年度, 예를 들어 1983년중의 市場開放與否만을 被說明變數로 사용할 경우 예측된 효과가 실제기대효과에 비해 下向偏倚될 우려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逆으로 만일 설명변수의 효과가 실제로 시차 없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기서와 같은 자료상의 시차허용은 역시 설명변수의 효과를 下向偏倚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分析結果가 本稿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오히려 부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偏倚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有意한 期待效果를 얻었다면 이는 오히려 本稿의 假說들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與否를 결정하는 요인, 즉 市場開放에 대한 需要決定要因을 분석해 보기 위해 對韓市場開放要求與否(REQ_i)를 被說明變數로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동일한 논의가 적용된다 하겠다.

以下에서는 實證分析에 사용된 說明變數(X_i)와 同 變數들의 분석상의 意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⁶⁾.

〈表 2〉 變數定義 및 資料出處

| | 變 數 定 義 | 資 料 出 處 |
|----------|--|--|
| 從屬變數 | | |
| Y_i | 1983~87년중 開放이면 $Y_i=1$, 未開放이면 $Y_i=0$ | 開放要求品目에 대해서는 韓國貿易協會 (1987a),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韓國 貿易協會(1987b)를 참조 |
| REQ_i | 1983~87년중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가 있었으면 $REQ_i=1$, 없었으면 $REQ_i=0$ | |
| 說明變數 | | |
| TA_i | 한국수입규제 품목의 1981년 實績關稅率 | 韓國開發研究院(1982) |
| NPR_i | 한국수입규제 품목의 1982년 名目保護率 | " |
| RPR_i | 한국수입규제 품목의 1982년 實效保護率 | " |
| $CR3_i$ | 한국의 1982년 產業集中率(上位 3社) | 韓國開發研究院·經濟企劃院統計局(1986) |
| SI_i | 한국의 1982년 產業同質性指數 | " |
| II_i | 한국의 1982년 產業包括度指數 | " |
| $ACR8_i$ | 미국의 1982년 產業集中率(上位 8社) | U.S. Department of Commerce(1986) |
| NO_i | 미국의 對韓市場開放要求回數 | 韓國貿易協會(1987a) |
| K_i | 資本集約的이면 $K_i=1$, 아니면 $K_i=0$ | |
| T_i | 技術集約的이면 $T_i=1$, 아니면 $T_i=0$ | |
| L_i | 勞動集約的이면 $L_i=1$, 아니면 $L_i=0$ | |
| A_i | 農水產物이면 $A_i=1$, 아니면 $A_i=0$ | |

가. 韓國의 保護率

保護率은 市場開放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美國의 輸出企業들은 韓國에 진출시 期待利得이 높을수록 美國政府에 대해 對韓市場開放要求를 해주도록 로비를 강화할 것이다. 韓國內의 保護率이 높다는 것은 美國企業에게는 그만큼 높은 期待利得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품목이나

분야의 보호율이 높을수록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은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공급측면에서 볼 때에는 기존의 보호하의 국내기업들은 保護 정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높은 렌트를 향유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市場開放에 따른 損失이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보호율이 높을수록 政府에 대한 開放反對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실세계 방어부에 미치는 효과는 이상의 상호 상충되는 쌍방의 세력 중 우세한 측의 영향력을 그만큼 더 크게 반영할 것이다.

여기서는 세가지의 保護率測定値를 이용하였다. *TA*는 1981년 현재의 실적관세율로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품목 중 많은 경우가 許可(非關稅規制)下에서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실제 적용되는 關稅率이다. *NPR*은 1982년 현재 名目保護率, *RPR*은 Balassa方法에 의한 1982년 현재 實效保護率이다. 여기서 명목보호율은 해당품목의 국제가격에 대한 국내가격의 비율로서 이 비율은 實績關稅率의 높낮이와 국내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존재여부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NPR*과 *TA*는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변수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두 변수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NPR*의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효과를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實效保護率(*RPR*)은 국내가격으로 평가한 부가가치를, 國際價格으로 환산한 부가가치에 대한 비율로서, 일단 名目保護率(*NPR*)의 효과를 統制(control)했을 경우 그 효과는 투입

요소의 국내가격의 국제가격에 대한 비율의 효과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⁷⁾.

따라서 *TA*나 *NPR*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美國의 壓力은 큰 반면 國內의 반대도 클 것이기 때문에 최종효과는 상대적인 세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RPR*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단 최종제품가격에 대한 保護效果(*NPR*效果)를 동시에 감안했을 경우 國內投入要素價格이 國際價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게 된다⁸⁾. 일반적으로 최종제품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은 상황에서 국내투입요소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면 국내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市場開放에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逆으로 미국기업의 입장에서 상대적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開放에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RPR*係數는 정치경제학적 요인의 상호작용보다는 오히려 韓國政府의 開放政策에 대한 일반적 기본원칙을 반영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開放의 衝擊이 적은, 다시 말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産業이나 品目を 우선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책방향이 실제로 집행되었다면 그 係數는 正의 符號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韓國의 産業集中度

産業集中度도 需要와 供給面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우선 해당품목이나 산업의 산업집중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韓國內市場이 독과점하에 있고 따라서 기존보호기업들이 독점적 이윤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美國의 輸出企業에게는 그만

- 7) *TA*, *NPR* 및 *RPR*간의 相關關係가 별로 높지 않아 多重共線性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上記 3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57개의 美國의 對韓 市場開放要求品目 표본에 있어서는 *TA*와 *NPR* 간에는 $-0.141(0.297)$, *TA*와 *RPR*간에는 $0.039(0.775)$, *NPR*과 *RPR* 간에는 $0.110(0.416)$ 이고 151개 전체표본의 경우는 각각 $-0.058(0.483)$, $0.067(0.415)$ 및 $0.073(0.376)$ 이었다. 여기서 ()안의 숫자는 상관계수가 0일 확률이다.
- 8) 이와 같이 *TA*, *NPR* 및 *RPR*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係數가 갖는 분석상의 의미는 單純化된 假定下에서 概括的으로 다음과 같다. 각 變數의 係數를 각각 α , β , r 라고 상정하면 關稅率의 효과는 $\alpha + \beta + r$, 관세율에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효과는 $\beta + r$, 投入財價格의 效果는 r 가 된다. 따라서 *TA* 및 *NPR*의 효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관계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물론 이들 係數豫測值들의 一致性(consistency)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α 는 대부분 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lpha + \beta + r$ 및 $\beta + r$ 의 符號도 상대적으로 絕對值가 큰 *NPR*의 係數 β 에 의해 주로 압도되고 있어 保護率의 효과는 *NPR*係數를 중심으로 論議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큼 기대이득이 높게 보이게 되고 따라서 美國으로부터의 市場開放에 대한 요구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 공급측면에서 볼 때에는 산업집중률이 높은 산업이나 품목의 경우 그만큼 市場開放에 따른 期待損失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對政府反對로비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편 그룹理論이나 規制理論 側面에서 볼 때에는 산업집중률이 높을수록 對政府로비가 용이하고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는 집중률이 높은 산업의 對政府反對로비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실제 市場開放與否에 미치는 효과는 보호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需要側의 正의 效果, 供給側의 負의 效果 중 그 영향력이 우세한 측면 반영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產業集中率 變數는 1982년 현재 上位 3社 集中率 $CR3$ 를 사용하였다.

다. 美國의 產業集中率

美國產業集中率의 영향은 주로 需要側面에 반영될 것이다. 美國輸出企業의 경우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自國內 해당산업이나 품목시장이 독과점적이어서 그 집중률이 높을수록 對政府로비가 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韓國의 市場開放與否에는 正의 效果를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測定變數로서는 1982년 현재 美國의 上位 8社 集中率 $ACR8$ 을 이용하였다.

9) 同 假說은 Stigler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非對稱性理論(asymmetry solution)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說明 및 引用은 左承喜(1987)를 參照하기 바란다.

라. 韓國產業의 同質性指數

同質性指數(SI)는 어느 산업내에서 대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수가 높을수록 그 산업의 同質性이 높다 하겠다. 이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規制理論에 따르면 산업내의 기업들의 제품이 한 종류에 집중될수록 政府에 의한 보호나 규제를 요구할 때 무임승차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많은 종류의 제품이 한 산업내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上記와 같은 對政府로비의 결과가 일부제품에는 유리하고 여타제품에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그만큼 로비의 참여도는 높아지고 무임승차는 낮아지게 된다⁹⁾.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同質性指數가 높을수록 對政府市場開放反對로비의 강도는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SI 는 市場開放의 供給에 正의 效果를, 실제개방여부에도 正의 效果를 미칠 것이다. 여기서는 1982년 현재 產業의 同質性指數를 사용하였다.

마. 韓國產業의 包括度指數

包括度指數(II)는 특정산업의 독립적 성격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이 지수가 높을수록 관련기업들이 해당산업에 속한 품목을 주생산품으로 출하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 경우 包括度指數가 높을수록 각 관련기업들은 그 산업에 대한 政府의 보호나 규제 조치에 따른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도지수가 높

을수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對政府市場開放反對로비의 강도는 높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따라서 II 는 市場開放供給과 실제 市場開放與否에 負의 效果를 미칠 것이다. 여기서는 1982년 현재의 包括度指數를 사용하였다.

바. 産業의 要素集約度

産業의 要素集約도는 해당산업이나 품목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해당산업이나 품목의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자세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변수의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韓國과 상대교역국, 특히 本 研究에서는 美國과의 상대적 要素賦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美國은 韓國에 비해 技術, 資本, 土地가, 韓國은 美國에 비해 勞動力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韓國은 勞動集約的 産業, 美國은 技術, 資本 혹은 土地集約的 産業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美國으로부터의 對韓市場開放要求는 技術 혹은 資本集約的 産業이나 農業部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韓國 쪽에서는 市場開放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이 부문들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勞動集約的 産業이나 품목의 경우는 韓國 쪽에서 볼 때에는 그 비교우위가 높기 때문에 開放에 대해 별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

며 美國 쪽의 입장에서는 그 開放에 대해 특별한 선호를 나타낼 이유가 없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자유무역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市場開放供給側面에서 正의 效果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資本集約度(K), 技術集約度(T), 農水産部門 與否(A)가 韓國의 實際市場開放與否에 미치는 효과는 需要側과 供給側 세력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하나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勞動集約度(L)의 경우는 正의 效果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여기서 K, T, L, A 의 實際測定은 구체적 資料의 不在로 筆者의 상식에 의거 1, 0 더미變數로 분류하였다.

사. 市場開放要求回數

美國의 市場開放壓力的 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변수로서 각 요구품목에 대해 그 開放要求回數(NO)를 설명변수로 이용해 보았는데 만일에 韓國이 美國의 압력에 강력히 대응했다면 市場開放與否에 대해 負의 效果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公式, 非公式채널을 통해 들어온 개방요구회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가 가용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美國의 압력 정도를 반영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이 변수는 정확한 정보만 가용하다면 美國의 市場開放需要를 측정할 수 있는 從屬變數로도 사용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 情報制約으로 이러한 시도가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였다. 여기서는 1983~87년에 걸쳐 나타난 美國의 市場開放要求回數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있어서는 說明變數들이 市場開放與否에 대해 갖는 정치경제학적 시사점을

10) 同 假說은 1人當 期待利益이 높을수록 로비의 강도가 높다는 그물理論의 시사점으로부터 유추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左承喜(1987)를 參照하기 바란다.

중심으로 그 효과에 대한 假說化를 시도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논의의 배후에는 政府의 政策決定이 合理的 自利追求行爲나 단순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대노력에 의해 주도된다는 강한 假說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假說과 대립되는 것으로 開化된 政府(enlightened government) 假說이 있다. 이 假說에 의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직 經濟論理에 따라 일부가 아닌 전체국민경제의 효율성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 假說은 일반적으로 本稿에서 채택한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의 효과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시사를 주지 않기 때문에 本研究을 통해 同 假說을 합리적 自利追求政府 假說에 대응하는 假說로서 검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本稿의 分析結果가 실증정치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지지하는(혹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반드시 開化된 政府假說을 否定(혹은 支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 節에서는 회귀분석결과를 논함에 있어서 일부 開化된 政府假說의 입장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겠다¹¹⁾.

11) 한편 이들 假說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施惠의 政府(benevolent government) 假說이 있는데 이 가설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룹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고자 하는 도덕적 고려에 의해 政府의 政策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문 중의 開化된 政府假說에 대한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구나 이 가설의 市場開放政策과의 이론적 및 현실적 관련성은 개화된 정부가설에 비해 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政府形態에 대한 諸般假說들에 대해서는 左承禧(1987)를 參照하기 바란다.

12) 로짓分析은 RAT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 市場開放에 대한 로짓函數豫測

前節에서 논의한 각 變數別 政治經濟學的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실제실증분석은 需要函數, 供給函數, 그리고 市場開放函數를 모두 추정하였다¹²⁾.

가. 市場開放需要函數 豫測結果

市場開放需要函數 式(1)의 實際推定模型은 다음과 같다.

$$REQ = D(TA, NPR, RPR, CR3, ACR8, (+) (+) (-) (+) (+) K, T, L, A) \dots \dots (1') (+) (+) (-) (+)$$

變數 밑의 符號는 期待符號이다. 여기서는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與否가 市場開放에 대한 需要函數를 반영한다고 본다. 국내변수인 *SI*, *II*는 美國의 수요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결과는 <表 3>의 <結果 I-1>과 <結果 I-2>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자는 變數 *K*, *T*, *L*, *A*가 더미變數이기 때문에 생기는 多重共線性 問題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외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두 가지 결과에 있어 어느 정도 그 유의성이 있는 變數인 *NPR*, *RPR*, *CR3*, *ACR8*, *T*, *L*, *A* 등을 중심으로 볼 때 *ACR8*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期待符號를 나타내고 있다.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는 기대한 대로 韓國의 名目保護率이 높을수록 높고, 對韓國競爭力이 낮을수록(주어진 *NPR*에서 *RPR*이 높을수록) 낮고, 韓國의 產業集中率이 높을수록 높고, 技術

〈表 3〉 韓國의 市場開放에 대한 로짓函數豫測結果

| | 需 要 函 數 | | 供 給 函 數 | 市 場 開 放 函 數 | | | | 標本結合 妥當性檢證 |
|---------------------------------|-----------------------|---------------------|---------------------------|----------------------|----------------------|-----------------------|-----------------------|----------------------|
| | I-1 | I-2 | II | III-1 | III-2 | IV-1 | IV-2 | V ²⁾ |
| 從屬變數 標本數 ¹⁾ | REQ 151 | REQ 151 | Y 94 | Y 57 | Y 57 | Y 151 | Y 151 | - - |
| 常數項 | -1.054 (-1.438) | 0.001 (0.001) | 3.882* (1.914) | 1.220 (0.502) | 7.313 (1.423) | 3.714** (2.526) | 5.309** (2.340) | -2.662 (-0.841) |
| TA | -0.002 (-0.216) | -0.005 (-0.537) | 0.012 (0.719) | -0.016 (-0.976) | 0.014 (0.612) | -0.001 (-0.059) | 0.020 (1.598) | -0.027 (-1.199) |
| NPR | 0.013 (1.238) | 0.002 (0.144) | 0.027 (1.509) | -0.022 (-1.430) | -0.029 (-1.407) | 0.043** (2.356) | 0.034* (1.838) | -0.049** (-2.076) |
| RPR | -0.003 (-1.607) | -0.002 (-1.192) | 0.0002 (0.272) | 0.001 (1.378) | 0.002* (1.686) | 0.001* (1.678) | 0.0005 (0.775) | 0.001 (0.845) |
| CR3 | 0.023*** (2.901) | 0.014 (1.626) | -0.028** (-2.040) | -0.043** (-2.049) | -0.083** (-2.269) | -0.036*** (-3.301) | -0.041*** (-3.239) | -0.015 (-0.609) |
| ACR8 | -0.020*** (-2.249) | -0.019* (-1.877) | - | 0.076*** (3.140) | 0.097*** (2.808) | - | - | 0.076*** (3.140) |
| SI | - | - | -0.308 (-0.269) | 1.171 (0.584) | 3.341 (1.246) | 0.484 (0.515) | 1.147 (1.096) | 1.478 (0.640) |
| II | - | - | -1.932 (-1.165) | -1.423 (-0.703) | -1.246 (-0.422) | -1.764 (-1.498) | -3.113** (-2.130) | 0.509 (0.194) |
| K | - | -0.360 (0.476) | - | - | -4.230 (-1.526) | - | -1.089 (-1.012) | - |
| T | - | 0.595 (1.187) | - | - | -1.342 (-0.698) | - | 1.221 (1.608) | - |
| L | - | -1.072 (1.436) | - | - | -4.692* (-1.926) | - | -0.968 (-1.023) | - |
| A | - | 1.499*** (2.347) | - | - | -6.109** (-2.343) | - | -2.519*** (-3.019) | - |
| NO | - | - | - | - | 0.007 (0.017) | - | -0.386 (-1.461) | - |
| DNPR ³⁾ | - | - | - | - | - | -0.060*** (-2.648) | -0.040* (-1.745) | - |
| DACR8 ³⁾ | - | - | - | - | - | 0.023** (2.237) | 0.034*** (2.400) | - |
| 平均尤度 (average likelihood) | 0.553 | 0.581 | 0.630 | 0.661 | 0.711 | 0.617 | 0.661 | - |
| χ^2 ⁴⁾ | 21.48*** (5) | 36.11*** (9) | 7.89 ⁵⁾ (6) | 38.9*** (7) | 33.7*** (12) | 24.74*** | 45.21*** | - |
| 1- $\frac{LR^6)}$ LUR | 1.0 | 1.0 | 0.98 | 1.0 | 1.0 | 1.0 | 1.0 | - |

註: 1) 57개는 1983~87년간의 美國의 開放要求品目, 151개는 1982년말 현재 輸入規制品目임. 94개는 美國의 開放要求가 없는 規制品目임.

2) 〈結果 V〉는 151개 품목에 대해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結果 II〉와 〈結果 III-1〉의 계수의 차이를 추정 한 결과임. 여기서 각 계수간의 관계는(〈結果 III-1〉의 係數推定值)-(〈結果 II〉의 係數推定值)= (〈結果 V〉의 추정치)임.

3) DNPR과 DACR8은 市場開放要求品目에 대해서는 원래 NPR, ACR8과 같고 요구가 없는 품목인 경우는 0임.

4) 計算方式은 $2(\log LR - \log LUR)$ 임. 여기서 LR은 제약을 가한 尤度函數값으로 常數項만을 이용하였고 LUR은 제약을 가하지 않은 尤度函數값임. ()안의 숫자는 χ^2 檢證을 위한 自由度임.

5) 25% 수준에서 유의.

6) R^2 와 유사한 개념이며, 여기서 LR은 설명변수로 常數項만을 사용하여 구한 것임. 1.0인 경우는 실제 계 산치는 1보다 작지만 소숫점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임.

7) 有意水準 分類 -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 : 10% 수준에서 유의.

8) 추정치 밑의 ()안의 숫자는 t값임.

集約的이고 土地集約的일수록 높은 반면 勞動集約的일수록 낮다. TA 나 K 의 有意度는 너무 낮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K 의 경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추진으로 資本集約的 産業에도 현재 韓國의 對美國比較優位가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K 의 有意성이 낮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³⁾.

그러나 美國의 産業集中率은 有意하면서도 期待와는 반대의 符號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정치경제학적 시사점과는 반대되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고려에 의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는 個別企業이 직접 韓國政府에 요구하거나 美國政府가 이를 대변할 수도 있고 美國政府가 독자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美國政府가 韓國內市場條件을 감안하여 個別企業들의 로비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對韓要求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美國內에서 로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혹은 로비가 전혀 없다($ACR8$ 이 낮다) 하더라도 그 産業이나 品目の 韓國內市場條件이 美國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市場開放要求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런데 美國의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內需市場을 중시했었기 때문에 韓國內市場與件에 무지했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받아들인다면 과거 市場開放要求의 개시단계인 要求品목의 申込過程에서는 企業들이 대정부로비에 대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란 기대를 가능케 한다. 이에 따르면 과거 韓美貿易摩擦의 開始期에는 對韓市場開放要求를 美國政府가 독자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 경우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與否와 $ACR8$ 과의 관계는 반드시 正의關係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겠다¹⁴⁾. 결국 式(1')의 예측결과는 대체로 정치경제학적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市場開放供給函數 豫測結果

市場開放供給函數 式(2)의 실제 豫測模型은 다음과 같다.

$$Y = S(TA, NPR, RPR, CR3, SI, II, K, T, L, A) \dots \dots (2')$$

(-) (-) (+) (-) (+)
(-) (-) (-) (+) (-)

여기서 被說明變數 Y 는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가 없었던 94개 品목의 實際市場開放與否이다. 시장개방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요측 세력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開放與否는 국내에서의 정치경제학적 요인의 발현으로서 공급세력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¹⁵⁾. 따라서

- 13) 이 결과에서 TA , NPR 및 RPR 係數의 보호의 효과에 대한 計量經濟學的 示唆는 註8)을 參照하기 바람이며 同註에서 논의한 이유로 해서 이하의 결과해석에 있어서는 주로 NPR 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14) 그러나 韓國內市場條件이 유리한 品목이 政府主導에 의해 일단 對韓市場開放要求品目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해당산업내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한국시장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련기업들의 對美國政府 및 對韓國政府에 대한 개방로비가 강화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同 開放要求品목의 실제 개방여부는 美國內의 産業集中率에 의해 正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市場開放壓力의 개시단계에서의 美國政府의 독자적인 요구행위는 개화된 政府假說에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 15) 그러나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品목에 대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94개 品목의 開放與否에 수요세력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 전체의 개방수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個別品目別 開放에 정치적

미국측 변수인 *ACR8*은 說明變數에서 제외된다. 實際推定은 *K, T, L, A*를 다 포함할 경우 多重共線性 때문에 추정과정이 收斂(*converge*)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表 3>의 <結果 II>에 요약하였다. 이 결과는 수요 함수 추정결과에 비하면 χ^2 값이 많이 저하되고 豫測의 適合度도 저하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豫測係數의 符號를 중심으로 보면 韓國의 產業集中率이 높을수록, 그리고 韓國產業의 포괄도가 높을수록 市場開放與否에는 負의 效果를 미치고 있어 기대부호와 부합되고 있다¹⁶⁾.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는 理論이 시사하는 바대로 *CR3*가 需要函數에서는 正의 有意한 效果를 미친 반면 供給函數에서는 負의 有意한 效果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RPR*의 係數도 그 유의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需要의 경우 負의 效果를 미친 반면 供給에는 正의 效果를 미치

고 있다. 이와 같은 기대했던 방향으로의 부호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실증적으로 分離認識(*identification*)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랄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PR*의 경우는 期待와 反對의 符號를 보이면서 그 유의성은 높게(15% 수준에서 有意)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政治經濟學的 要因이 아닌 다른 요인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사료된다. 즉 이 경우 政府의 市場開放政策이 開化된 政府假說에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政府가 過保護된 産業의 개방을 통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關聯産業의 非效率性을 교정하려는 方向에서 政策을 추진해 왔다면 *NPR*의 效果는 正의 方向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한편 *TA*의 경우는 需要函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유의성이 너무 낮아 比較論議의 意義가 별로 없다고 하겠다.

다. 市場開放函數 豫測結果

市場開放需要와 供給勢力의 상호작용결과인 市場開放函數, 式(3)의 實際推定模型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변수 밑의 의문부호는 期待符號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Y = H(TA, NPR, RPR, CR3, ACR8, SI, \\ (?) (?) (?) (?) (+) (+) \\ II, K, T, L, A, NO) \dots (3') \\ (-) (?) (?) (+?) (?) (?)$$

式(3')의 실제추정은 두 가지 표본에 대해 시도되었다.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 대상인 57개 품목 표본과 전체 151개 품목의 표본에 대해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를 통해 美國의

제한적요인을 반영하는 方向에서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여기서는 편의상 美國을 수요자로, 韓國을 공급자로 분리하여 수요와 공급을 논의하고 式(2')를 供給函數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式(2')는 國內의 市場開放需要勢力까지도 다 감안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式(2')에서 正의 期待符號를 갖는 變數, 특히 *RPR*이나 *L* 등을 國內의 市場開放需要勢力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左承喜(1987)를 참조하기 바란다.

16) *K, T, L, A*를 포함한 결과가 수렴되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20段階(step)에서 얻어진 결과 중 어느 정도 유의한 변수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dots -0.040CR3 \quad -3.932II \quad -2.010A \quad \dots \\ (-2.503) \quad (-1.948) \quad (-1.951)$$

여기서 ()안은 t값임. 이 결과도 <結果 II>와 대체로 같은 부호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A*가 기대한 바와 같이 負의 符號를 보이고 있어 農産물일수록 그 開放率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17)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市場開放函數 豫測結果'에 대한 논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市場開放壓力的 유무가 실제 어떤 형태로 韓國의 市場開放政策推進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57개 품목에 대한 결과(表 3의 <結果 III-1>과 <結果 III-2> 참조)를 보면 需要函數나 供給函數와도 다른 부호유형을 보이고 있다. *TA*의 경우는 여전히 그 유의성이 낮다. *NPR*의 경우는 負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需要供給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할 때 흥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結果 I>에 의하면 開放壓力은 *NPR*이 높은 품목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結果 III>에 의하면 그 중에서 開放與否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NPR*이 낮은 품목이 개방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供給函數의 경우(<結果 II>)는 *NPR*이 높을수록 개방될 확률은 높다. 이 결과를 통해 유

추한다면 韓國의 市場開放은 그 보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그룹의 경우에는 보호율이 높은 품목이 더 많이 개방된 반면 그 보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그룹(주로 美國의 開放要求品目)의 경우에는 보호율이 높은 품목의 개방률이 오히려 더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개화된 政府假說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自利追求政府假說에 부합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시사점에 대한 한가지 가능한 합리적 설명으로서 美國의 市場開放壓力的 可視化가 開放政策의 이해득실에 대해 무지했던 국내 이해관련그룹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오히려 市場開放政策의 집행을 어렵게 하고 정치경제학적 요인들에 의한 정책의 오염을 초래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⁹⁾.

한편 *RPR*의 경우는 正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이는 공급측의 세력이 압도한 결과라 하겠다. 美國의 對韓市場開放要求는 *RPR*이 높을수록 낮은 반면 실제개방은 *RPR*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美國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경쟁력이 유리한(*RPR*이 낮은) 품목의 개방을 원한 반면 실제로 韓國의 市場開放에는 경쟁력을 갖춘(*RPR*이 높은) 품목을 먼저 개방한다는 開放政策 의지가 더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²⁰⁾.

産業集中率의 경우, 우선 國內集中率 *CR3*의 경우는 需要側의 正의 효과를 供給側의 負의 효과가 압도하여 결과적으로 市場開放에 負의 有意한 효과를 시현하였다²¹⁾. 한편 美國의 集中率 *ACR8*의 경우는 期待符號인 正의 有意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需要函數에서의 負의 효과와는 상충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美國의 政府와 企業들의 對

18) <結果 II>와 <結果 III-1>과의 *NPR*係數의 차이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후술하는 <結果 V>를 통해 시도되었으며 9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은 오히려 韓國의 市場開放政策의 합리적 추진을 어렵게 했다는 주장이 가능하 하겠다.

20) 이를 開化된 政府假說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政府의 정책의지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하겠다.

21) *CR3*가 市場開放의 供給函數나 市場開放函數에 대해 負의 有意한 效果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政府의 幼稚産業保護政策과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開化된 政府假說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開放에 대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유치산업보호의 부작용을 인식한 결과이기 때문에 同 保護政策에 의해 독과점화된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개화된 정부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뿐 아니라 만일 보호하의 獨寡占品目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 개방을 늦춘다는 정책이 개화된 政府假說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경쟁력 차이가 *RPR*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동일한 경우 독과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의 개방을 지연시키는 것이 개화된 政府假說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韓市場開放要求때문에 대한 잠정적 가설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즉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의 전개과정은 市場開放要求의 개시단계에서는 주로 美國政府가 주도하였으나 일단 開放要求가 공식화된 후에는 個別企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들의 對美國 및 韓國政府에 대한 開放로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假說에 의하면 市場開放要求與否는 美國의 產業集中率에 의해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겠지만 開放要求品目的 實際開放與否는 이러한 로비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한편 *SI*와 *II*의 경우는 有意性이 높지는 않지만 기대한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SI*의 경우 특히 <結果 III-2>에 의하면 그 유의성도 다소 개선되고 있어 산업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반대로비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Stigler의 非對稱性理論이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³⁾.

要素集約度變數들은 전부가 負의 效果를 미치고 있다. 특히 技術集約的이고 土地集約的인 경우 美國의 開放壓力에도 불구하고 實際開放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반영되었다 하겠다²⁴⁾. 한편 資本集約的인 경우도 상대적으로 개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韓國의 비교우위가 낮은 품목에 대한 開放이 상대적으로 낮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政府가 幼稚產業 보호라는 측면에서 開放政策을 추진해 왔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勞動集約的인 경우마저도 그 開放率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겠다²⁵⁾.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要素集約度變數들만의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비교우위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이 품목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市場開放에 부정적 대응을 해왔지 않나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겠다. 물론 이런 해석을 함에 있어서 한가지 유보사항으로서 고려해야 할 점은 *K*, *T*, *L*, *A* 變數들에 대한 실제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筆者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恣意性의 개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151개 품목에 대한 결과를 보기로 하겠다. 우선 이 경우는 市場開放要求가 있었던 57개 품목 표본과 요구가 없었던 94개 품목 표본의 結合標本(pooled sample)을 이용한 셈이기 때문에 이 두 표본의 결합이 통계적 타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일 兩標本에 있어서 韓國의 市場開放行

22) 전술한 '수요함수 예측결과'에서 *ACR8*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II*의 경우는 <結果 IV>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후술하겠다. <結果 IV>에 의하면 *II*의 유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4) 전술한 바와 같이 開放要求의 경우 技術集約的이고 土地集約的인 품목에 대한 開放要求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25) 勞動集約的인 품목의 경우 比較優位는 있다 하더라도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開放에 따른 比較優位 발현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그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로 만일에 그 산업에 충격이 생겨 저소득층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그 개방을 주저했다면 이는 施惠的 政府假說에 부합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상당한 역사가 따른다 하겠다. 한편 94개 표본에서 *K*, *T*, *L*, *A*를 다 사용한 결과-수렴하지는 않았지만-도 比較優位論에 입각한 開化된 政府假說과는 일치되지 않는 시사를 주고 있다. 註 16)에서 제시한 일부 변수에 추가하여 *T*의 계수를 보면 1.708(1.459)[여기서 () 안은 t값]로서 미국의 압력이 없는 경우에도 비교우위가 낮은 기술집약적 품목의 開放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開化된 政府假說에 배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態가 상이하다면 이 두 표본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의 통계적 타당성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57개 품목에 대한 결과(〈結果 III〉)와 94개 품목에 대한 결과(〈結果 II〉)의 추정치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151개 표본에 대해 더미變數接近法을 이용하여 〈結果 III-1〉과 〈結果 II〉의 관련계수간의 차이에 대한 추정치와 그에 대한 t -統計値를 추정하였다. 이 결과는 〈表 3〉의 〈結果 V〉에 요약하였다²⁶⁾.

〈結果 V〉에 의하면 市場開放要求가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市場開放行態가 상이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즉, 韓國의 供給函數(〈結果 II〉)와 美國의 市場開放要求가 있는 경우의 實際市場開放函數(〈結果 III-1〉)와는 이론적으로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도 그 상이함이 지지되고 있다. 특히 NPR 의 계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NPR 이 높은 품목에 대한 市場開放度가 美國의 開放壓力이 없을 경우보다 있을 경우에 더 낮았음을 의미하고 있다²⁷⁾. $ACR8$ 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市場開放要求가 있었던 57개 품목에만 관련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유의하다는 결과는 당연하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151개 품목에 대한 로짓分析이 통계적인 타당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市場開放要求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NPR 과 $ACR8$ 의 계수로부터 市場開放需要勢力을 분리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結果 IV-1〉과 〈結果 IV-2〉에서 $DNPR$ 과 $DACR8$ 은 원래의 NPR 과 $ACR8$ 에 市場開放要求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하는 더미變數를 곱한 변수로서, 미국측으로부터의 需要勢力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結果 IV-1〉의 NPR 係數는 市場開放供給函數 〈結果 II〉의 NPR 係數와 $DNPR$ 과 $DACR8$ 의 係數는 市場開放函數 〈結果 III-1〉의 NPR 과 $ACR8$ 의 係數와 그 부호와 크기가 비슷할 것이다. 이 관계는 〈結果 IV-2〉와 〈結果 III-2〉간에도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잇점은 물론 전체표본에 공통되는 市場開放行態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²⁸⁾.

이하에서는 〈結果 IV-2〉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²⁹⁾. TA 및 NPR 의 계수를 보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경우 市場開放政策은 保護率이 높은 품목을 먼저 개방하는 政策基調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다³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단 開放要

26) 예측방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더미變數 D 를 市場開放要求品目에 대해서는 $D=1$, 요구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D=0$ 으로 定義하고 각 변수에 D 를 곱하여 새로운 변수를 정의한 후 전체표본 151개에 대해 이 변수들을 원래의 변수들과 같이 이용하여 예측한다. 이때 원래의 변수들의 계수는 〈結果 II〉와 동일하고, 새로 정의된 변수들의 계수는 〈結果 III-1〉에서 〈結果 II〉를 뺀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ACR8$ 의 경우 이론적으로 式(3')에는 포함되나 式(2')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수의 차이는 단순히 〈結果 III-1〉과 같으며 式(2')의 결과 중 K , T , L , A 를 포함한 결과가 수렴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의 檢證도 이 變數들을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27) NPR 의 係數가 〈結果 II〉에서는 正인 반면 〈結果 III-1〉에서는 負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28) 또 한가지 이러한 결합분석의 잇점은 94개 표본의 경우 K , T , L , A 를 사용한 경우 결과가 수렴하지 않는 반면 151개 품목의 경우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을 통해 이 변수들이 94개 표본에 기초한 市場開放供給에 미치는 효과를 유추해 볼 수도 있다.

29) 이하에서의 논의는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하는 의미를 갖는다.

求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조가 역전되었음이 *DNPR*의 負의 豫測係數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RPR*의 계수에 의하면 역시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따르면 일단 정책기조가 開化된 政府假說과 부합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CR3*와 *II*의 係數가 負의 符號에다 그 유의성도 높게 나오고 있고 *SI*가 正의 符號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는 정치경제학적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美國의 産業集中率(여기선 *DACR8*)도 正의 有意한 效果를 미치고 있어 美國의 開放壓力이 강하게 우리의 開放政策을 오염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比較優位變數들을 보면 *K*, *L*, *A*의 경우는 <結果 III-2>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T*의 변수는 正으로 有意(1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를 <結果 III-2>의 負의 效果와 비교검토할 경우 美國의 압력이 없는 경우에도 技術集約도가 높은 품목의

개방도가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幼稚産業保護政策 입장에서의 해석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이 경우 <結果 III-2>와 연관하여 본다면 市場開放要求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응이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技術集約的 産業의 경우 그 연륜이 짧기 때문에 이해관련그룹으로서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對政府로비가 미약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幼稚産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방도가 높아지게 되지 않았나 사료된다³¹⁾. 마지막으로 *NO*는 유의성이 낮기는 하지만 負의 效果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韓國이 美國의 市場開放壓力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무리가 전혀 없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³²⁾.

IV. 結 論

이상 實證分析結果의 要點을 假說檢證의 側面과 政策行態說明의 차원에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理論의 檢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實證分析結果는 정책분석에 있어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및 유용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市場開放의 需要와 供給函數가 자료에 의해 각각 다르게 인식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美國의 開放需要는 韓國의 獨寡占品目 및 美國의 比較優位가 있는 品目에 집

30) 이 결과가 *TA*의 유의성이 어느 정도 높은 유일한 경우(15% 수준에서 유의)이다. 따라서 關稅率效果의 정확한 값은 *TA*, *NPR* 및 *RPR*係數의 합으로 關稅率에 추가적인 보호조치의 효과는 *NPR*과 *RPR*係數의 합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31)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결과는 보호나 개방에 대한 요소별 접근보다는 산업별 접근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左承禧(1987)을 參照하시기 바란다.

32)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制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筆者의 생각으로는 변수 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추정상의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NO*의 성격상 開放要求가 없는 94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NO*=0이기 때문에 *NO*는 일종의 더미變數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NO*의 負의 係數는 <表 1>에 보인 바와 같이 57개 開放要求品目的 개방률이 94개 품목의 개방률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상의 특징이 자료 제약에 따라 일부품목만을 추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표본의 偏倚 때문일 수도 있다 하겠다.

증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품목은 피해 왔음에 반해 韓國의 공급은 오히려 독과점 품목의 경우나 포괄도가 높은 경우와 같이 對政府開放反對로비가 용이한 품목이나 비교우위가 낮은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타당성을 지지함은 물론 左承喜(1987) 및 本稿에서 채택한 市場開放의 政治經濟學에 대한 수요공급모형 분석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축약형으로서의 市場開放函數에 측정결과도 主要變數의 경우 有意하게 期待符號를 나타내고 있어 더욱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市場開放의 需要·供給 및 縮約型을 따로 추정함으로써 수요·공급세력의 상대적 압도 여부를 좀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도 本稿에서 채택한 需要·供給模型의 장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分析結果는 일부변수의 경우 政治經濟學的 接近의 基本假說인 自利追求政府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開化된 政府假說을 지지하는 시사를 주기도 하였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이 두 假說이 政策決定者들의 行態를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앞서의 결론을 약화시킨다고는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政府는 自利追求側面과 開化된 政府側面을 동시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결과는 금후의 연구에 있어서 이 두 가설을 독립된 가설로서 조직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行態의 설명이라는 측면에서 分析結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市場開放政策은 政治經濟學的 要因에 의해 적지않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독과점품목이나 포괄도가 높은 산업의 개방도가 낮다는 證左는 국내의 이해관련그룹에 의한 開放反對要求가 반영되었음을 나타내며 美國의 독과점품목에 대한 開放度가 높다는 證左는 美國으로부터의 市場開放要求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둘째로, 동시에 우리나라의 市場開放政策은 開化된 政府假說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경제원칙에 의해 추진되어 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즉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나 보호율이 높은 품목의 개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政府에 의해 開放政策方向으로 제시된 경쟁력보유품목의 우선적 개방이라는 원칙과 부합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개방을 통해 國內産業의 경쟁기반을 향상시킨다는 일반적 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의 일반성은 그렇게 강하게 지지되지 않았다. 즉 비교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勞動集約的 産業의 開放度가 낮은 반면 오히려 비교우위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技術集約的 産業의 開放度가 높다는 증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美國의 對韓市場開放壓力은 오히려 韓國의 市場開放政策의 기본원칙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開放政策遂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호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美國의 開放要求가 없을 때에는 개방될 확률이 높은 반면 일단 개방요구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개방될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든가 美國의 獨寡占品目들에 대한 개방도가 높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本稿에서의 分析結果와 左承喜(1987)

의 單純資料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몇가지 시사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자의 결과에 의하면 美國의 開放壓力에 대한 수요측면의 가설에 비해 국내 이해관련그룹들의 영향에 대한 공급측면의 假說이 상대적으로 잘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韓國의 産業集中率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결과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産業集中率이 한국측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공급측면에서의 정치경제학적 요인도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左承喜(1987)에서의 자료분석방법의 단순성에 기인하지 않나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韓國의 市場開放政策은 물론 그 출발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최적정책으로서 채택이 되고 추진되어 왔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관련그룹들의 自己庇護主張이나 美國의 開放壓力에 접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정치경제학적 요인들에 의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물론 經濟政策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經濟原則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政策의 樹立·執行이 정치경제학적 요인들에 의해 지나치게 오염된다면 이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물론 國民福祉增進이라는 궁극적 政策目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市場開放政策도 예외가 아니라 하겠다. 기존에 보호를 받던 그룹으로부터의 開放反對나 美國으로부터의 開放壓力 모두가 市場開放政策을 통한 전체 복지증진이라는 기본목표의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開放政策의 추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이러한 政治經濟學的 要因을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筆者는 국내에 잔존하는 렌트의 사전제거를 포함하는 몇가지 정책제안을 左承喜(1987)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³³⁾.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재론하기보다는 금후의 經濟民主化 趨勢의 進展에 따른 政策環境의 變化가 일반적으로 開放政策을 포함하는 일반경제정책의 입안·추진에 있어 이해관련그룹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는 오히려 政策方向의 歪曲 및 執行의 效率性 低下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本稿를 마감하고자 한다.

33)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左承喜(1987) 第IV章 結論을 參照하기 바란다.

▷ 參 考 文 獻 ◁

左承喜,「市場開放壓力와 對應의 政治經濟學的
分析」,『韓國開發研究』,第9卷 第4號,韓
國開發研究院,1987 겨울.
韓國開發研究院,「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改編
方案」,1982.
韓國開發研究院·經濟企劃院統計局,『產業組織
統計資料集(1982)』,1986.
韓國貿易協會,『美國의 開放要請品目 輸入實
態』,1987a.

韓國貿易協會,『輸出入 期別公告』,1987b.
Pindyck, Robert S. and Daniel L. Ru-
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McGraw-Hill,
1981.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1982 Census of Manu-
factures*, 1986.

<附表 1> 韓國의 輸入規制 및 輸入開放 關聯 데이터

| 品 目 名 | Y | REQ | TA | NPR | RPR | CR3 | ACR8 | SI | II | NO | K | T | L | A |
|----------------|---|-----|-------|------|---------|------|------|-------|-------|----|---|---|---|---|
| 1. 자동차부품 | 1 | 1 | 30.4 | 28 | 61.5 | 49.9 | 70 | 0.280 | 0.719 | 4 | 1 | 1 | 0 | 0 |
| 2. 아몬드 | 1 | 1 | 60.2 | 26 | 29.4 | 100 | 51 | 0.545 | 0.637 | 2 | 0 | 0 | 0 | 1 |
| 3. 확성기 | 1 | 1 | 10.3 | 45.5 | 84.3 | 33.8 | 53 | 0.303 | 0.761 | 4 | 1 | 1 | 0 | 0 |
| 4. 감귤류 과일 | 1 | 1 | 60.2 | 26 | 29.4 | 98.6 | 42 | 0.545 | 0.637 | 4 | 0 | 0 | 0 | 1 |
| 5. 건설장비 | 1 | 1 | 13.4 | 13 | 3.2 | 35.8 | 50 | 0.343 | 0.282 | 4 | 1 | 0 | 0 | 0 |
| 6. 카메라 | 1 | 1 | 26.7 | 46.1 | 100.5 | 80.0 | 84 | 0.585 | 0.502 | 3 | 1 | 1 | 0 | 0 |
| 7. 담배 및 시가 | 1 | 1 | 143.9 | 16.3 | 57.6 | 99.9 | 78 | 0.989 | 0.011 | 5 | 0 | 0 | 1 | 1 |
| 8. 화장품 | 1 | 1 | 35.2 | 20.1 | 28.4 | 82.3 | 41 | 0.345 | 0.741 | 4 | 0 | 0 | 1 | 0 |
| 9. 증량측정기기 | 1 | 1 | 10.8 | 16.3 | 22.4 | 50.1 | 52 | 0.556 | 0.444 | 1 | 1 | 1 | 0 | 0 |
| 10. 유리그릇 | 1 | 1 | 30.6 | 7.8 | 1.3 | 53.3 | 73 | 0.512 | 0.558 | 4 | 0 | 0 | 1 | 0 |
| 11. 반제품마루판 | 1 | 1 | 29.3 | 0 | -17.2 | 39.9 | 58 | 0.913 | 0.825 | 3 | 0 | 0 | 1 | 0 |
| 12. 공작기계 | 1 | 1 | 5.7 | 16.3 | 21.7 | 48.8 | 30 | 0.242 | 0.441 | 2 | 1 | 1 | 0 | 0 |
| 13. 카펫트 | 1 | 1 | 9 | 0.6 | -23.5 | 71.0 | 81 | 1 | 0.396 | 4 | 0 | 0 | 1 | 0 |
| 14. 전동공구 | 1 | 1 | 7.3 | 32.6 | 70.3 | 58.6 | 69 | 0.467 | 0.269 | 2 | 1 | 1 | 0 | 0 |
| 15. 초콜렛 | 1 | 1 | 59.7 | 7.3 | -16.1 | 93.9 | 85 | 0.396 | 0.259 | 2 | 0 | 0 | 1 | 0 |
| 16. 과일직물 | 1 | 1 | 41.6 | 0.8 | -2.3 | 83.3 | 70 | 0.736 | 0.743 | 4 | 0 | 0 | 1 | 0 |
| 17. 섬유사 | 1 | 1 | 29.9 | 17.8 | 21.5 | 32.3 | 75 | 0.625 | 0.748 | 4 | 0 | 0 | 1 | 0 |
| 18. 발전기 및 부품 | 1 | 1 | 7.3 | 32.6 | 70.3 | 58.6 | 52 | 0.508 | 0.472 | 1 | 1 | 1 | 0 | 0 |
| 19. 신선한 버찌 | 1 | 1 | 60.2 | 26 | 29.4 | 98.6 | 42 | 0.545 | 0.637 | 1 | 0 | 0 | 0 | 1 |
| 20. 방향성 전기강판 | 1 | 1 | 9.4 | 12.8 | 33.3 | 79.6 | 98 | 0.308 | 0.684 | 1 | 1 | 1 | 0 | 0 |
| 21. 용접기 | 1 | 1 | 12.6 | 12.8 | 10.2 | 77.1 | 59 | 0.754 | 0.217 | 1 | 1 | 1 | 0 | 0 |
| 22. 냉장고 및 냉동기 | 1 | 1 | 22 | 41.7 | 324.6 | 83.8 | 96 | 0.857 | 0.309 | 1 | 1 | 1 | 0 | 0 |
| 23. 자동차 | 1 | 1 | 27.3 | 39.2 | -293.5 | 99.4 | 97 | 0.345 | 0.706 | 1 | 1 | 1 | 0 | 0 |
| 24. 배터리 | 1 | 1 | 26.1 | 63.8 | 531.8 | 83.0 | 78 | 1 | 0.462 | 1 | 1 | 0 | 0 | 0 |
| 25. 석유난로 | 1 | 1 | 20.4 | 15.2 | 10.8 | 67.8 | 44 | 0.363 | 0.507 | 1 | 1 | 0 | 0 | 0 |
| 26. 등 | 1 | 1 | 10 | 11.8 | 26.2 | 50.8 | 99 | 0.427 | 0.556 | 1 | 0 | 0 | 1 | 0 |
| 27. 화장비누 | 1 | 1 | 29.3 | 27.2 | 107.3 | 92.5 | 68 | 0.475 | 0.718 | 1 | 0 | 0 | 1 | 0 |
| 28. 사료용 동물단백질 | 1 | 1 | 5.8 | 8 | 11.3 | 29.5 | 69 | 0.449 | 0.483 | 1 | 0 | 0 | 1 | 1 |
| 29. 면실유 | 1 | 1 | 9.3 | 5.2 | -59.5 | 100 | 68 | 0.360 | 0.472 | 1 | 0 | 1 | 0 | 0 |
| 30. 가금류 | 1 | 1 | 0 | 45.9 | 82.1 | 100 | 37 | 1 | 0.279 | 1 | 0 | 0 | 0 | 1 |
| 31. 동물용 사료 | 1 | 1 | 20 | 20 | -3072.4 | 32.7 | 69 | 0.918 | 0.668 | 1 | 0 | 0 | 0 | 1 |
| 32. 가 축 | 1 | 1 | 0 | 45.9 | 82.1 | 92.7 | 55 | 0.995 | 0.497 | 1 | 0 | 0 | 0 | 1 |
| 33. 가축사료(알팔파초) | 0 | 1 | 20 | 20 | -3072.4 | 29.5 | 30 | 0.918 | 0.668 | 4 | 0 | 0 | 0 | 1 |
| 34. 고 기 | 0 | 1 | 23.3 | 64.4 | -0.6 | 82.7 | 55 | 0.355 | 0.379 | 4 | 0 | 0 | 0 | 1 |
| 35. 엔진부품 | 1 | 1 | 3.1 | 3.1 | -11.8 | 81.1 | 64 | 0.361 | 0.469 | 2 | 1 | 1 | 0 | 0 |
| 36. 면도기와 면도날 | 1 | 1 | 4.9 | 18.4 | 28.8 | 96.6 | 99 | 0.242 | 0.749 | 4 | 1 | 0 | 0 | 0 |
| 37. 포 도 | 0 | 1 | 60.2 | 26 | 29.4 | 98.6 | 33 | 0.545 | 0.639 | 1 | 0 | 0 | 0 | 1 |
| 38. 냉동감자 | 0 | 1 | 39.1 | 37.5 | 38.7 | 100 | 40 | 0.545 | 0.639 | 1 | 0 | 0 | 0 | 1 |
| 39. 제조과실 | 0 | 1 | 48.4 | 4.2 | -46.9 | 35.4 | 33 | 0.545 | 0.639 | 4 | 0 | 0 | 1 | 1 |

| | | | | | | | | | | | | | | |
|---------------------------|---|---|------|-------|---------|------|----|-------|-------|---|---|---|---|---|
| 40. 사 승 | 0 | 1 | 27.6 | 36 | 19.7 | 100 | 36 | 0.995 | 0.497 | 1 | 0 | 0 | 0 | 1 |
| 41. 램 콘 | 0 | 1 | 59.7 | 7.3 | -16.1 | 95.1 | 82 | 0.515 | 0.593 | 1 | 0 | 0 | 1 | 1 |
| 42. 테니스라켓 | 0 | 1 | 4 | 11.6 | -0.4 | 89.0 | 33 | 0.303 | 0.619 | 1 | 0 | 0 | 1 | 0 |
| 43. 의료장비 | 0 | 1 | 10.6 | 5.3 | -8.5 | 85.1 | 47 | 0.364 | 0.828 | 2 | 1 | 1 | 0 | 0 |
| 44. 대 두 | 0 | 1 | 11 | 181.4 | 215.1 | 100 | 91 | 0.959 | 0.894 | 1 | 0 | 0 | 0 | 1 |
| 45. 우 지 | 0 | 1 | 9.3 | 5.2 | -59.5 | 100 | 35 | 0.449 | 0.483 | 1 | 0 | 0 | 0 | 1 |
| 46. 계란 및 관련생산물 | 0 | 1 | 24.7 | 8.2 | -18 | 98.3 | 31 | 0.559 | 0.515 | 1 | 0 | 0 | 0 | 1 |
| 47. 건포도 | 0 | 1 | 49.1 | 6.3 | -21.6 | 100 | 58 | 0.545 | 0.637 | 1 | 0 | 0 | 0 | 1 |
| 48. 건오얏 | 0 | 1 | 49.1 | 6.3 | -21.6 | 100 | 58 | 0.545 | 0.637 | 1 | 0 | 0 | 0 | 1 |
| 49. Powered Ice-cream Mix | 0 | 1 | 59.7 | 7.3 | -16.1 | 94.2 | 32 | 0.6 | 0.480 | 1 | 0 | 0 | 1 | 0 |
| 50. 통신기기 | 1 | 1 | 9.9 | 19.4 | 35.8 | 84.3 | 50 | 0.508 | 0.577 | 1 | 1 | 1 | 0 | 0 |
| 51. 소형컴퓨터 및 주변기기 | 0 | 1 | 15.9 | 30.2 | 89.7 | 98.0 | 55 | 0.694 | 0.039 | 6 | 1 | 1 | 0 | 0 |
| 52. 크레인 | 0 | 1 | 13.4 | 13 | 3.2 | 88.2 | 33 | 0.343 | 0.282 | 1 | 1 | 0 | 0 | 0 |
| 53. 과일주스 | 0 | 1 | 49.1 | 6.3 | -21.6 | 69.5 | 49 | 0.545 | 0.637 | 1 | 0 | 0 | 0 | 1 |
| 54. 액체펌프 | 1 | 1 | 6 | 32 | 62.4 | 99.9 | 54 | 0.304 | 0.442 | 1 | 1 | 0 | 0 | 0 |
| 55. 기체펌프 | 0 | 1 | 6 | 32 | 62.4 | 100 | 35 | 0.304 | 0.442 | 1 | 1 | 0 | 0 | 0 |
| 56. Carbofuron | 1 | 1 | 5.3 | 9.1 | -17.5 | 58.0 | 65 | 0.483 | 0.706 | 1 | 0 | 1 | 1 | 0 |
| 57. 포도주 | 1 | 1 | 42.2 | 14 | 16.1 | 90.1 | 68 | 0.785 | 0 | 1 | 0 | 0 | 1 | 0 |
| 58. 수산통조림 | 0 | 0 | 40.4 | 8.5 | 41.6 | 41.6 | 54 | 0.493 | 0.678 | 0 | 0 | 0 | 1 | 1 |
| 59. 계 분 | 1 | 0 | 42.3 | 25.8 | 13789.5 | 57.7 | 60 | 0.914 | 0.634 | 0 | 0 | 0 | 1 | 1 |
| 60. 계 당 | 1 | 0 | 11.5 | 53.7 | 133 | 100 | 92 | 0.943 | 0.454 | 0 | 0 | 0 | 1 | 1 |
| 61. 맥 주 | 1 | 0 | 24.9 | 0 | -41.5 | 100 | 94 | 0.990 | 0.401 | 0 | 0 | 0 | 1 | 0 |
| 62. 청량음료 | 1 | 0 | 53.3 | 34.4 | 61.6 | 56.7 | 24 | 0.320 | 0.669 | 0 | 0 | 0 | 1 | 0 |
| 63. 시멘트 | 1 | 0 | 19.7 | 54.4 | -545.8 | 81.1 | 53 | 0.867 | 0.529 | 0 | 0 | 0 | 1 | 0 |
| 64. 석 탄 | 0 | 0 | 10 | 0 | -1.8 | 54.2 | 45 | 0.995 | 0.786 | 0 | 0 | 0 | 1 | 0 |
| 65. 석연제품 | 1 | 0 | 27.3 | 4.3 | -12.4 | 61.5 | 68 | 0.624 | 0.732 | 0 | 0 | 0 | 1 | 0 |
| 66. 계 혁 | 1 | 0 | 39.1 | 38.6 | -15.2 | 3.6 | 31 | 0.826 | 0.780 | 0 | 0 | 0 | 1 | 0 |
| 67. 모 피 | 1 | 0 | 24.6 | 0 | -12.8 | 40.5 | 19 | 0.353 | 0.828 | 0 | 0 | 0 | 1 | 0 |
| 68. 합성섬유 | 0 | 0 | 28.4 | 17.5 | -0.3 | 90.2 | 90 | 0.625 | 0.748 | 0 | 0 | 0 | 1 | 0 |
| 69. 관유리 | 1 | 0 | 40.5 | 17.6 | 22.7 | 100 | 90 | 0.870 | 0.127 | 0 | 0 | 0 | 1 | 0 |
| 70. 알루미늄 | 1 | 0 | 10.4 | 24.5 | 49.3 | 93.1 | 91 | 0.427 | 0.556 | 0 | 1 | 1 | 0 | 0 |
| 71. 견직물 | 0 | 0 | 21.9 | 3.6 | 5 | 97.6 | 67 | 1 | 0.778 | 0 | 0 | 0 | 1 | 0 |
| 72. 목재가구 | 1 | 0 | 4 | 0.2 | -10.7 | 37.9 | 33 | 0.497 | 0.943 | 0 | 0 | 0 | 1 | 0 |
| 73. 펄 프 | 0 | 0 | 6 | 11.6 | 31.6 | 99.9 | 55 | 0.986 | 0.013 | 0 | 0 | 0 | 1 | 1 |
| 74. 합성염료 | 1 | 0 | 27.9 | 25.6 | 42.3 | 59.2 | 66 | 0.279 | 0.673 | 0 | 0 | 0 | 1 | 0 |
| 75. 질소비료 | 1 | 0 | 22 | 57.5 | 281.5 | 85.6 | 50 | 0.895 | 0.289 | 0 | 0 | 0 | 1 | 0 |
| 76. 합성수지제품 | 1 | 0 | 33.2 | 16.3 | -9.1 | 49.6 | 76 | 0.971 | 0.632 | 0 | 0 | 0 | 1 | 0 |
| 77. 타이어 및 튜브 | 1 | 0 | 19 | 14.9 | 37.5 | 80.6 | 87 | 0.747 | 0.575 | 0 | 1 | 1 | 0 | 0 |
| 78. 강 관 | 1 | 0 | 17 | 26.1 | 64.9 | 65.4 | 89 | 0.764 | 0.627 | 0 | 1 | 1 | 0 | 0 |
| 79. 전선 및 케이블 | 1 | 0 | 21.2 | 32.3 | 204.2 | 82.1 | 78 | 0.481 | 0.793 | 0 | 1 | 0 | 0 | 0 |
| 80. 의약품 | 1 | 0 | 22.7 | 50.1 | 139 | 32.7 | 41 | 0.498 | 0.867 | 0 | 0 | 1 | 0 | 0 |

| | | | | | | | | | | | | | | |
|------------------|---|---|------|------|-------|------|----|-------|-------|---|---|---|---|---|
| 81. 편집내의 | 1 | 0 | 5.8 | 3 | -0.9 | 73.5 | 38 | 0.947 | 0.338 | 0 | 0 | 0 | 1 | 0 |
| 82. 문방구류 | 1 | 0 | 58.1 | 22.6 | 48.2 | 56.8 | 52 | 0.519 | 0.730 | 0 | 0 | 0 | 1 | 0 |
| 83. 장난감 | 1 | 0 | 14.6 | 0.4 | -22.8 | 12.4 | 55 | 0.707 | 0.940 | 0 | 0 | 0 | 1 | 0 |
| 84. T.V. | 1 | 0 | 33.6 | 29.2 | 52 | 95.8 | 90 | 0.351 | 0.566 | 0 | 1 | 1 | 0 | 0 |
| 85. 녹음기 | 1 | 0 | 39 | 63.9 | 115.8 | 44.9 | 70 | 0.351 | 0.566 | 0 | 1 | 1 | 0 | 0 |
| 86. 자전거 | 1 | 0 | 34 | 16.3 | 19.7 | 39.4 | 85 | 0.474 | 0.655 | 0 | 0 | 0 | 1 | 0 |
| 87. 시 계 | 1 | 0 | 29.7 | 30.8 | 49.6 | 68.3 | 58 | 0.522 | 0.640 | 0 | 0 | 1 | 1 | 0 |
| 88. 모터사이클 | 1 | 0 | 34.2 | 15.3 | 6.1 | 90.0 | 87 | 0.792 | 0.374 | 0 | 1 | 1 | 0 | 0 |
| 89. 라디오 및 전축 | 1 | 0 | 10.3 | 45.5 | 84.3 | 59.2 | 89 | 0.351 | 0.566 | 0 | 0 | 1 | 1 | 0 |
| 90. 농업기계 | 1 | 0 | 8.3 | 24.7 | 49.7 | 71.4 | 61 | 0.553 | 0.583 | 0 | 1 | 0 | 0 | 0 |
| 91. 섬유기계 | 1 | 0 | 13 | 11.6 | 4 | 14.9 | 32 | 0.205 | 0.930 | 0 | 1 | 0 | 0 | 0 |
| 92. 사무 및 서비스용기계 | 1 | 0 | 33.3 | 29.4 | 50.9 | 97.9 | 84 | 0.528 | 0.679 | 0 | 0 | 1 | 0 | 0 |
| 93. 압연기 | 1 | 0 | 17.3 | 18.1 | 24.7 | 65.8 | 61 | 0.582 | 0.426 | 0 | 1 | 1 | 0 | 0 |
| 94. 전 지 | 1 | 0 | 26.1 | 63.8 | 531.8 | 97.7 | 78 | 0.912 | 0.531 | 0 | 1 | 0 | 0 | 0 |
| 95. 직물용 재봉기 | 0 | 0 | 33.2 | 31.4 | 64.7 | 49.2 | 77 | 0.377 | 0.618 | 0 | 1 | 0 | 0 | 0 |
| 96. 전화기 및 교환기 | 1 | 0 | 9.8 | 4.2 | -12 | 61.3 | 91 | 0.550 | 0.692 | 0 | 1 | 1 | 0 | 0 |
| 97. 철강제 선박 | 0 | 0 | 2.3 | 0.4 | -30.6 | 78.5 | 63 | 0.581 | 0.682 | 0 | 1 | 0 | 0 | 0 |
| 98. 선박용 부분품 | 0 | 0 | 3.9 | 9.8 | 13.4 | 67.7 | 63 | 0.602 | 0.593 | 0 | 1 | 0 | 0 | 0 |
| 99. 철도차량 | 1 | 0 | 2.9 | 5.4 | -10.9 | 100 | 68 | 0.866 | 0.004 | 0 | 1 | 0 | 0 | 0 |
| 100. 우유 및 기타낙농품 | 0 | 0 | 24.7 | 8.2 | -18 | 100 | 48 | 0.633 | 0.544 | 0 | 0 | 0 | 1 | 1 |
| 101. 수산지장품 | 0 | 0 | 16.3 | -2.5 | -25.3 | 13.6 | 54 | 0.447 | 0.908 | 0 | 0 | 0 | 1 | 0 |
| 102. 빵 류 | 1 | 0 | 47.3 | 30.1 | 45.5 | 57.7 | 69 | 0.787 | 0.705 | 0 | 0 | 0 | 1 | 1 |
| 103. 과자류 | 0 | 0 | 59.7 | 7.3 | -16.1 | 95.1 | 32 | 0.515 | 0.593 | 0 | 0 | 0 | 1 | 0 |
| 104. 면 류 | 1 | 0 | 58.6 | 0.2 | -37.3 | 94.2 | 55 | 0.858 | 0.512 | 0 | 0 | 0 | 1 | 0 |
| 105. 내화용 점토제품 | 1 | 0 | 29.4 | 34.8 | 284.8 | 69.8 | 75 | 0.601 | 0.710 | 0 | 0 | 0 | 1 | 0 |
| 106. 합금강 | 1 | 0 | 13 | 27.1 | 124.3 | 95 | 88 | 0.391 | 0.114 | 0 | 1 | 1 | 0 | 0 |
| 107. 면직물 | 1 | 0 | 41.6 | 0.8 | -2.3 | 59.0 | 94 | 0.538 | 0.437 | 0 | 0 | 0 | 1 | 0 |
| 108. 관 지 | 1 | 0 | 7 | 32.8 | 122.1 | 13.8 | 47 | 0.441 | 0.788 | 0 | 0 | 0 | 1 | 0 |
| 109. 가공지 | 1 | 0 | 28.1 | 14.3 | 19.8 | 39 | 42 | 0.441 | 0.788 | 0 | 0 | 0 | 1 | 0 |
| 110. 지제용기 | 1 | 0 | 29.3 | 8.9 | -5.1 | 37.5 | 93 | 1 | 0.798 | 0 | 0 | 0 | 1 | 0 |
| 111. 황 산 | 1 | 0 | 12.4 | 25.0 | 60.8 | 83.5 | 72 | 0.142 | 0.609 | 0 | 0 | 0 | 1 | 0 |
| 112. 화약류 | 1 | 0 | 12.7 | 14.4 | 2.6 | 99.4 | 92 | 0.439 | 0.526 | 0 | 1 | 1 | 0 | 0 |
| 113. 잉 크 | 1 | 0 | 33.6 | 17 | 21.1 | 69.2 | 53 | 0.564 | 0.517 | 0 | 0 | 0 | 1 | 0 |
| 114. 나사제품 | 1 | 0 | 21.9 | 15.6 | 33.8 | 31.7 | 22 | 0.590 | 0.822 | 0 | 1 | 0 | 0 | 0 |
| 115. 금속포장용기 | 1 | 0 | 26.3 | 3.2 | -18.2 | 52.4 | 94 | 0.637 | 0.761 | 0 | 1 | 0 | 0 | 0 |
| 116. 전 구 | 1 | 0 | 16.4 | 5.8 | -4.7 | 40.0 | 96 | 0.299 | 0.818 | 0 | 0 | 0 | 1 | 0 |
| 117. 혁제외류 | 1 | 0 | 46.3 | 12.3 | -31.9 | 44.2 | 53 | 0.909 | 0.457 | 0 | 0 | 0 | 1 | 0 |
| 118. 혁제화류 | 1 | 0 | 39 | 29.8 | 31.3 | 51.9 | 41 | 0.354 | 0.686 | 0 | 0 | 0 | 1 | 0 |
| 119. 사진감광재료 | 1 | 0 | 34.7 | 25.1 | 62.5 | 89.0 | 97 | 0.383 | 0.719 | 0 | 0 | 1 | 0 | 0 |
| 120. 금속가구 | 1 | 0 | 16.6 | 9.5 | -6.6 | 18.7 | 25 | 1 | 0.561 | 0 | 1 | 0 | 0 | 0 |
| 121.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 | 1 | 0 | 20.4 | 15.2 | 10.8 | 55.3 | 75 | 0.352 | 0.596 | 0 | 1 | 1 | 0 | 0 |

| | | | | | | | | | | | | | | |
|------------------|---|---|------|------|-------|------|----|-------|-------|---|---|---|---|---|
| 122. 저항기 및 콘덴서 | 1 | 0 | 27 | 29.7 | 54.3 | 95.7 | 61 | 0.414 | 0.514 | 0 | 1 | 1 | 0 | 0 |
| 123. 식료품 가공기계 | 1 | 0 | 24.5 | 20.1 | 36 | 44.7 | 46 | 0.262 | 0.660 | 0 | 1 | 0 | 0 | 0 |
| 124. 가죽용 재봉기 | 0 | 0 | 33.2 | 31.4 | 64.7 | 49.2 | 77 | 0.377 | 0.618 | 0 | 1 | 0 | 0 | 0 |
| 125. 변압기 | 1 | 0 | 17.3 | 18.1 | 24.7 | 65.8 | 87 | 0.520 | 0.618 | 0 | 1 | 0 | 0 | 0 |
| 126. 송배전기기 | 1 | 0 | 17.3 | 28.3 | 57.1 | 65 | 79 | 0.447 | 0.673 | 0 | 1 | 0 | 0 | 0 |
| 127. 식용유저가공품 | 1 | 0 | 59.6 | 6.9 | 5.4 | 79.2 | 79 | 0.338 | 0.160 | 0 | 0 | 0 | 1 | 1 |
| 128. 청 주 | 1 | 0 | 150 | 0 | -27.5 | 100 | 82 | 1 | 0.074 | 0 | 0 | 0 | 1 | 1 |
| 129. 과실주 | 0 | 0 | 52 | 34.5 | 120.5 | 100 | 68 | 0.785 | 0 | 0 | 0 | 0 | 1 | 1 |
| 130. 폴리아크릴 | 1 | 0 | 19.8 | 37.2 | 176.7 | 100 | 90 | 0.625 | 0.748 | 0 | 0 | 1 | 0 | 0 |
| 131. 폴리아미즈 | 1 | 0 | 40 | 45.1 | 381.9 | 100 | 95 | 0.625 | 0.748 | 0 | 0 | 1 | 0 | 0 |
| 132. 전 사 | 0 | 0 | 30.7 | 2.4 | 9.1 | 84 | 67 | 1 | 0.778 | 0 | 0 | 0 | 1 | 0 |
| 133. 금 은 | 0 | 0 | 20 | 88.5 | 528.4 | 98.1 | 20 | 0.427 | 0.556 | 0 | 0 | 0 | 1 | 0 |
| 134. 아 연 | 1 | 0 | 20 | 65.5 | 433.3 | 97.8 | 99 | 0.427 | 0.556 | 0 | 0 | 0 | 1 | 0 |
| 135. 내연강판 | 0 | 0 | 19.7 | 27.8 | 150.4 | 99.9 | 54 | 0.308 | 0.684 | 0 | 1 | 1 | 0 | 0 |
| 136. 봉 강 | 0 | 0 | 11.6 | 1.4 | -44 | 79.6 | 62 | 0.308 | 0.684 | 0 | 1 | 0 | 0 | 0 |
| 137. 도자기 | 0 | 0 | 20.8 | 14.3 | 31.7 | 49.5 | 53 | 0.790 | 0.808 | 0 | 0 | 0 | 1 | 0 |
| 138. 귀금속과 보석류 | 0 | 0 | 3.8 | 0 | 18.2 | 89.7 | 20 | 0.427 | 0.556 | 0 | 0 | 0 | 1 | 0 |
| 139. 정 당 | 1 | 0 | 45.6 | 27.3 | 54.2 | 100 | 92 | 0.943 | 0.454 | 0 | 0 | 0 | 1 | 1 |
| 140. 동압연품 | 1 | 0 | 6 | 10 | 35.5 | 81.1 | 52 | 0.867 | 0.529 | 0 | 1 | 0 | 0 | 0 |
| 141. 연마재 | 1 | 0 | 38.3 | 40 | 439.7 | 47.4 | 64 | 0.405 | 0.793 | 0 | 1 | 0 | 0 | 0 |
| 142. 끈, 로우프, 어망 | 1 | 0 | 30.9 | 25.7 | 34.2 | 71.3 | 60 | 0.783 | 0.487 | 0 | 0 | 0 | 1 | 0 |
| 143. 나프타 | 1 | 0 | 20 | 0 | -9.3 | 94 | 56 | 0.157 | 0.547 | 0 | 0 | 0 | 1 | 0 |
| 144. 윤활유 | 1 | 0 | 28.5 | 30 | 547.4 | 74.9 | 74 | 0.874 | 0.829 | 0 | 0 | 0 | 1 | 0 |
| 145. 인쇄용지 | 1 | 0 | 43.3 | 31.3 | 392.9 | 39.4 | 73 | 0.397 | 0.817 | 0 | 0 | 0 | 1 | 0 |
| 146. 노트 및 사무용지 | 1 | 0 | 54 | 18.5 | 11.8 | 22.9 | 57 | 0.397 | 0.817 | 0 | 0 | 0 | 1 | 0 |
| 147. 접착제 | 1 | 0 | 29.3 | 17.7 | 16.9 | 46.7 | 31 | 0.929 | 0.622 | 0 | 1 | 0 | 0 | 0 |
| 148. 형 강 | 1 | 0 | 17.7 | 0 | -50.9 | 84.9 | 78 | 0.308 | 0.684 | 0 | 1 | 0 | 0 | 0 |
| 149. 서적 및 기타 간행물 | 1 | 0 | 0 | 0 | -23.7 | 36.1 | 47 | 0.926 | 0.812 | 0 | 0 | 1 | 1 | 0 |
| 150. 목공기계 | 1 | 0 | 20.9 | 28.9 | 57.4 | 80.2 | 98 | 0.665 | 0.334 | 0 | 1 | 0 | 0 | 0 |
| 151. 보일러 | 1 | 0 | 7.1 | 7.9 | -7.9 | 83.5 | 84 | 0.363 | 0.507 | 0 | 1 | 0 | 0 | 0 |

註: 각 變數에 대한 定義 및 出處에 대해서는 <表 2> 참조.

<附表 2> 美國의 市場開放要求 57個品目的 細部內譯

| 品目名(通稱分類) | 細部內譯(CCCN 基準) | 品目名(通稱分類) | 細部內譯(CCCN 基準) |
|-------------------|---|---------------------------------|---|
| 1. 자동차 부품 | 8462-0101, 0102 8463-0209- 8508-0205 8509 0103 | 23. 자동차 | 8702-0101, 0102, 0103, 0199, 0201 0202, 0299, 0301, 0302, 0399 0401, 0402, 0499, 0501, 0502 0503, 0601, 0602, 0603, 0604 0701, 0702, 0799, 0801, 0899 |
| 2. 아몬드 | 0805-0100 | 24. 배터리 | 8503-0103, 0202 |
| 3. 확성기 | 8514-0202 | 25. 석유난로 | 7336-0201 |
| 4. 감귤류과일 | 0802-0100, 0200, 0300, 0400, 0500 | 26. 등 | 7401-0200, 0401, 0402, 0403, 0404 0499 |
| 5. 건설장비 | 8423-0101, 0102, 0105, 0106, 0109 0119, 0302, 0303, 0399 | 27. 화장비누 | 3401-0102 |
| 6. 카메라 | 9007-0201, 0202, 0299 | 28. 사료용 동물 단백질 | 2307-0299 |
| 7. 담배 및 시가 | 2402-0101, 0201 | 29. 면실유 | 1507-0100, 0200 |
| 8. 화장품 | 3306-0101, 0102, 0199, 0201, 0202 0299, 0301, 0302, 0303, 0304 0399, 0400, 0500, 0600 | 30. 가금류 | 0105-0101, 0201, 0202 0202-0101, 0102, 0103, 0199 |
| 9. 중량측정기기 | 8420-0101, 0102, 0103, 0104, 0105 0199 | 31. 동물용 사료 | 2307-0103 |
| 10. 유리그릇 | 7013-0101, 0102, 0199 | 32. 가축 | 0102-0101, 0199, 0201, 0299 0103-0100, 0200 0104-0100, 0200 |
| 11. 반제마루판 | 4423-0400 | 33. 가축사료(알 팔파초) | 1210-0201 |
| 12. 공작기계 | 8445-0100, 0201, 0299,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99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99, 0501, 0502 0503, 0504, 0599, 0601, 0602 0603, 0699, 0700, 0801, 0802 0899, 0901, 0902,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99 1100, 1200, 1300, 1401, 1499 1501, 1502, 1503, 1504, 1601 1602, 1603, 1701, 1703, 1704 1705, 1706, 1707, 1799, 1801 1802, 1803, 1804, 1899 | 34. 고기 | 0201-0101, 0102, 0300, 0500 1601-0100, 0200 1602-0101, 0102 |
| 13. 카페트 | 5801-0101, 0102, 0201, 0202 5802-0100, 0201, 0202, 2099, 0301 0302, 0399, 0401, 0499 | 35. 엔진부품 | 8406-0899, 0904, 0999 |
| 14. 전동공구 | 8505-0199, 0201, 0202, 0299, 0301 0399 | 36. 면도기 및 면 도날 | 8211-0100, 0200, 0399 |
| 15. 초콜렛 | 1806-0101, 0199 | 37. 포도 | 0804-0100 |
| 16. 과일작물 | 5804-0101, 0102, 0201, 0202, 0299 0401, 0402, 0403, 0499 | 38. 냉동감자 | 0702-0300 |
| 17. 섬유사 | 5101-0100,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301, 0302, 0400 0501, 0502, 0503, 0504, 0505 0506, 0601, 0602, 0701, 0702 0703, 1201, 1202, 1203, 1204 1205, 1301, 1302, 1303 5601-0101, 0199, 0201, 0299, 0301 0302, 0303, 0399 0600, 0701 0702, 0799, 0201, 0103, 0104 0302, 0303 | 39. 조제과실 | 2006-0101, 0199,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0299, 0301 0302, 0303, 0304, 0305, 0399 0401, 0499 |
| 18. 발전기 및 부 품 | 8501-0101, 0102, 0201, 0202, 0301 0302, 0303, 0304 | 40. 사슴 | 0106-0906 |
| 19. 신선향 버저 | 0807-0400 | 41. 활론 | 1005-0200 |
| 20. 방향성 전기 장관 | 7315-2801, 3401 | 42. 테니스라켓 | 9706-0202 |
| 21. 용접기 | 8511-0201, 0299, 0301, 0302, 0303 0399 | 43. 의료장비 | 9017-0101, 0198, 0199, 0201, 0202 0301, 0398, 0399, 0401, 0402 |
| 22. 냉장고 및 냉 동기 | 8415-0102, 0199, 0200, 0301, 0399 0499 | 44. 대두 | 1201-0400 |
| | | 45. 우지 | 1502-0100 |
| | | 46. 계란 및 관련 생산물 | 0405-0101, 0102, 0200 |
| | | 47. 건포도 | 0804-0200 |
| | | 48. 건오얏 | 0812-0500 |
| | | 49. Powered Ice-cream Mix | 確認 不可 |
| | | 50. 통신기기 | 8513-0399, 0401, 0403, 0499, 0500 0600, 0807 8515-0101, 0102, 1003 |
| | | 51. 소형 컴퓨터 및 주변기기 | 8453-0101, 0102, 0202, 0203, 0299 0300, 0400, 0501, 0502, 0509 0601, 0602, 0603, 0604, 0605 0606, 0698 |
| | | 52. 크레인 | 8422-0499, 1202, 1299, 1900, 2000 2100, 2200 |
| | | 53. 과일즙스 | 2007-0101, 0200, 0300, 0400, 0601 0602, 0603, 0699 |
| | | 54. 액체펄프 | 8410-0304 |
| | | 55. 기체펄프 | 8411-0100 |
| | | 56. Carbofuron | 2935-1699 |
| | | 57. 포도주 | 2205-0100, 0200, 0300, 0400 |